

광주시 도시공원의 이용과 공급에 관한 연구

吳 炳 太

호남대학교 공과대학 조경학과

A Study on the Use and Provision of Urban Parks in Kwang Ju City.

Oh, Byung -T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onam University

ABSTRACT

Parks in Kwang Ju are determined by the development of a housing project under the regulations of land development rather than the planning approach of park provision.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who is the provider of parks, to estimate the size of urban parks per person in the area of the housing project, to look at the spatial allocation patterns of park provision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 profiles of users and the social profile of an area(Dong).

This research has produced the following major conclusions :

1. The city government should set up a master plan of park provision to control park delivery system to avoid maldistribution.
2. A positive discrimination policy should be introduced to disadvantaged areas in terms of park provision.
3. The null hypothesis -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distance and park Use - is rejected by the correlation rate of 0.4984.
4. The ratio of parks per a person ; 10.43m²/person in 1990 has decreased to 10.41m²/person in 1994.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of parks in terms of quantity could not catch up the increase of population.

I. 序 論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광주의 도시공원은 市에서 공급하는 공원과 택

지 개발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공원이 구성되어 도시에 있어서 공원시설의 진단에 따른 공원공급의 현상을 지리적으로 분포현상을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 공원의 공급은 시민들에게 자연에 대한

친화와 삶의 휴식과 위안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성 (Equity)과 형평성 (Equality)에 입각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기능적으로는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단위 지역(洞, 區)에 공평하게 공급되었나를 조사함은 시민의 복지혜택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광주시 공원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당국은 어느곳에 공원을 조성시키는가?

택지개발후 공원 공급주체들은 어느정도의 공원을 어느지역에 공급시키는가? 등에 대한 조사 해석을 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약된 도시공원의 공급은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도시공원의 이용상황과 이용자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도시공원 계획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공시설의 일부분으로서 도시에 공급되는 시설은 균등히 공급 분배되어야 한다. 공공시설의 배분이 지역간에 필요에 따라 형평성 있게 공급되었는가에 대한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Lineberry 1977, Merget 1976, Oh Byung Tae 1986) 도시 공원이 시민들의 욕구와 흥미에 공헌하는 것은 도시공원이 사회적 그리고 형태적 의미뿐만 아니라 물리적 의미로도 도시생활의 질에 거대한 자산이 되기 (Hayward 1986) 때문이다. 金(1994)은 도시공원 녹지는 도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위락활동 및 도시환경을 높일수 있는 장소라 하였으며 이용자의 질적·양적 욕구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속에서의 양적 욕구와 공급의 현상을 비교함으로써 도시공원 공급의 취약할 지역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다.

도시공원의 분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Rooden(1983)은 네델란드 Rotterdam의 공원의 공급을 분석하였고 Koehler와 그의 동료는 (1987) 시카고 공원공급의 불평등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Mladenka(1989)는 공원과 레크레이션 시설의 분포에 논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사회연구소(1985)의 서울시 공원에 관한 연구에서 區域別配分現況에 대하여 區別 분류하여 공급현황을 분석한바 있다.

도시 공원의 이용에 관한 연구는 공원의 이용

실태분석의 金(1977), 李(1978)와 徐(1983)의 연구가 있었고, 朴(1984), 張(1985)과 金(1986)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金(1994)의 2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원녹지계획 지표연구」에서 이용자 설문조사와 행태조사를 통하여 공원이용의 문제점을 도출 시킨바 있으며 권(1994)의 2인은 「도시 근린 공원의 도달거리와 포착력에 관한 계량모형연구」에서 도시 공원의 이용을 유인하는 유인력에 관하여 연구한바 있다. 안(1991)의 3인은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접근성 측정에 관한 연구」로 접근성 측정을 하여 취약지역에 관한 오픈스페이스 공급 우선 순위 판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吳(1992)는 「광주시 어린이 공원의 분포 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광주시내의 어린이 공원의 공급현황과 불공평한 정도를 측정 공급순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시전체에 있어서 공원분포와 공원 공급 주체를 살펴 봄으로서 제약된 공원 자원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용하는 가에 대하여서는 공급과 이용의 함수 인자로서 연구하지 않은 실정이다.

河野泰治와 그의 동료는 (1987) 「유아·아동공원의 배치계획에 대하여 (계획단위와 이용행태 분석에 대해)」에서 어린이들의 이용 행태에 관하여 논한 바 있다. 최(1994)의 5인은 「대도시 주민의 옥외 여가활동 선택모형 추정에 관한연구」에서 개인 변수에 따른 근린공원의 선택 확률과 이용빈도를 측정하였다. 衰茂壽太郎(1988)에 의해 연구된 「일본의 공공 공원배치 계획 특성」을 살펴보면 일본은 세가지의 공원배치 시기 특성을 지니는데 明治시대의 입지본위형 공원배치계획 (resource-oriented parkland)의 1기와 大正시기의 분산계획(distributed planning)2기와 3단계 시기는 昭和시대의 구조적 공원 배치계획(Structural park-placement planning)이 있었다.

1) 본 연구는 광주시 도시 공원에서 근린 공원과 어린이 공원에 관한 공원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 공원공급 주체의 파악과 개발 지역의 공원 면적율과 인구 규모 개발면적을 비교 조사하고

공원 수요 산정
공원 취약지역 설정
2) 도시공원의 공급 현황이 시민의 접근성과 공원의 위계성에 부응여부를 연구하며

3) 도시공원의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광주시 도시 공원중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한정하며 공급적 측면에서 공원의 質의측면은 배제하고 量的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공원분포의 공간적 단위는 행정동과 자치구이다.¹⁾

이용적 측면에서는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주거단지의 공원이용과 市에서 공급계획에 의하여 공급된 공원의 이용을 연구 범위로 한다.

3. 연구 자료

1) 공원공급현황에 관한 조사는 문헌 및 자료를 조사하여 관계기관인(행정청인 광주시청, 대전시청, 대구시청과 인청시청과 택지개발 주체인,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및 토지구획정리 주체인, 광주시청)으로 부터 통계자료를 파악하였다.

2) 도시공원을 행정동 단위로 재분류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도상의 근린 공원지역을 같은 scale의 행정지도로 Overlap하여 동(洞) 단위의 근린공원 면적을 파악하였고 근린공원중 조성되지 않은 지역은 면적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3) 어린이 공원의 법정동 단위로 분류된 공원 현황을 주소에 따라²⁾ 행정동으로 파악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어린이 인구는 3세에서 12세까지의 인구를 1993년 광주시 인구 통계에서 동별로 분류파악하여 사용하였다.

4) 공원표본의 추출은 광주시 공원 총 50개 근린공원 중 미조성되거나 조성되고 있는 40개 지역을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7개 지역을 모집단이 크기않아 무작위 추출(Simple Random Sampling)으로 무작위로 뽑아 선정하였다.

<표 1> 설문지 조사현황

· 근린공원

조사공원	조사 Case	행정구역
① 산정공원	90	광주시 광산구
② 월곡공원	100	광주시 광산구
③ 중외공원	101	광주시 북구
④ 우치공원	99	광주시 북구
⑤ 사직공원	96	광주시 서구
⑥ 광주공원	98	광주시 서구
⑦ 봉선공원	98	광주시 서구
	계 402매	

· 어린이 공원

조사공원	조사 Case	행정구역
⑧ 무량공원	70	광주시 동구
⑨ 쌍촌제2공원	70	광주시 서구
⑩ 우산 13공원	63	광주시 북구
⑪ 금호제3공원	65	광주시 광산구
⑫ 봉선제1공원	66	광주시 서구
	계 334	

공원이용 실태 조사는 총 736의 이용자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공원이용자들을 공원현장에서 직접 면접하여 설문지를 제공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1차 조사는 1993년 11월 27일 부터 1993년 12월 5일 까지 공원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주말(토·일)에 12장소에서 이용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또한 2차조사는 1994년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상기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4. 연구 방법

공원이 분포의 변천과정을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 보았으며 분석의 단위는 분포에 있어 행정동과 자치구이며 공급주체에 있어서는 택지개발주체인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와 市당국이다. 분석방법은 광주시 자료 및 택

1) 현재 광주직할시는 4개 구(區)와 95개 행정 동(洞)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내무부, 지방행정구역요람, 1993, pp361~383

지개발업체의 공원공급 현황을 자료와 설문지 조사에 따른 자료를 spss를 이용하여 교차분석(Crosstab)과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상관성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II. 本 論

1. 공원 공급의 기획 기준

도시 공원 공급의 기획 기준은 <표 2>에서와 같이 ① 도시 공원법에 의한 기준 ② 도시계획법에 의한 기준 ③ 토지 구획정리법에 의한 기준 ④ Apt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크게 4분류가 있으나 현재 광주시 도시공원의 공급 기준은 ③과 ④의 기준에 의하여 공급되며 ①의 기준은 공원공급에서 한 도시의 시가화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총체적 개면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市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시의 공원의 공급상황을 산정하는데 이용될 뿐 택지개발시의 시가화 구역의 공원면적의 산정에 부분적으로 신규

주택 건설사업시 일괄 적용함은 불합리하다.³⁾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시 공원공급의 기준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적용하는 시행면적의 3%의 공원면적을 확보하도록 지도하면서 Apt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기준은 도시계획법상 개발허가 절차시 원칙적으로 개발 구역 면적의 3% 이상이 공원녹지로 공급하게 되어 있으며 ③의 기준에 있어서도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구역내의 거주 인구 1인당 3㎡이상 또한 시행구역 면적의 3% 이상의 공원면적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공원 공급기준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원공급 기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분류의 문제점들이 돌출된다.

1) 지정된후 개발이 안된 공원 때문에 발생하는 단지의 실질 공원율의 저하
감독관청인 市는 택지개발 주체들이 택지개발시

<표 2> 도시 공원공급 계획기준

구 분	내 용 (한 국)	일 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계획구역 1인당 6㎡ 시가화구역 1인당 3㎡	도시계획구역 1인당 6㎡ 시가화구역 1인당 3㎡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3	공원에 대한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시계획법상 개발허가 절차 원칙적으로 개발구역 면적의 3% 이상이 공원녹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시행구역 면적의 3%이상 공원 면적 정비	구획정리사업에서도 시행규칙 내의 거주인구 1인당 3㎡이상 또한 시행구역 면적의 3%이상 의 공원면적 정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제5조, 제9조)	근린공원은 주구당(반경 400m 이내) 1개소 이상 계획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유치거리 500m 이내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 규모이상의 공원(설치할 계획이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경우 포함) 있는 경우 제외된다.	

3) 건설부 (93), 공원설치의 적정기준 설정 검토, 건설부 녹지공원과

에 주변에 근린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조성이 않된 경우(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하 규정에서 유치거리 500m 이내 근린 공원 이상의 공원이 있는 경우 그 공원이 지정만 되어 있고 조성이 않된 경우) 단지안에 공원을 개발하지 않음은 주변 지정만 되어 있는 토지가 공원으로 개발될 기대가 요원함으로 택지개발 주체업체에게 市는 지정된 공원에 대하여 단지안에 필요한 근린공원의 량 만큼에 해당하는 근린공원지정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도록 지도하든가 근린공원 매입 및 조성비를 市에 예치토록 조 례화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법에 의한 1인당 도시계획구역내 6㎡와 시가화구역내 3㎡는 일본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범으로서 광주시 경우 도시계획 구역 인구(현재 120만)와 시가화 인구(110만)와의 차이가 10만정도 밖에 차이가 없는 실정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구역 인구를 적용하였을 경우 시가화 인구를 적용한 면적보다 2배의 차이가 나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도시공원법 기준의 개정이 요망된다.

3)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1인당 6㎡, 3㎡보다는 대상인구와 공원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도시 환경개선, 주민건강증진 목적으로 도시공원등 정비 긴급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률에 의하여 <표 3>과 같이 정비 표준이 제시되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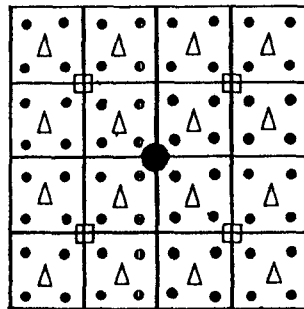
<표 3> 도시 공원의 정비 표준

기 시 행	정 비 표 준
도시계획구역 1인당 6㎡	1. 어린이공원 1㎡/인
시가화구역 1인당 3㎡	2. 근린공원 2㎡/인
1. 어린이공원	3. 지구공원 1㎡/인
2. 근린공원	4. 체육공원 1㎡/인
3. 체육공원	5. 종합공원 1.5㎡/인
	6. 광역공원 2㎡/인

4) 근린공원 접근 거리 개념의 문제점
1인당 3㎡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산정

되는바 어린이 공원 유치거리 250m 이내 설치규모 1,500㎡ 이상, 근린공원(일상생활) 500m 이내 10,000㎡ 이상, 도보접근 근린공원 1000m 이내 30,000㎡ 이상 도시계획구역내 근린공원 유치거리 제한없음에 100,000㎡ 이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공원 64개소×1,500㎡ = 96,000㎡와 일상생활권 16개소×10,000㎡ = 160,000㎡, 도보권 근린공원 4개소×30,000㎡ = 120,000㎡와 도시계획구역 지구공원 1개소×100,000㎡ = 100,000㎡이다.



- 어린이공원
- △ 근린공원 (일상생활권)
- 근린공원 (도보권)
- 지구공원 (도시계획구역)

(그림 1) 계획단위 적용기준

따라서, 총 공원면적은 476,000㎡이다. 전체 공 원면적율은 공원면적/지구면적 = 2.975%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어린이 공원을 96,000/16,000,000=0.64%

일상생활권 근린공원을 160,000/16,000,000=1%

도보권 근린공원을 120,000/16,000,000=0.75%

지구공원을 100,000/16,000,000=0.63%이다.

이 기준은 인구 밀도 100인/ha(저밀도) 공원면 적에 적용하며 (160,000인×3㎡ = 480,000㎡이 어서 총 공원면적 476,000㎡의 비는 480,000/476,000 ≃ 1이다.) 저밀도 (100인/ha)에서 공원을과 1인 당 소요면적 3㎡는 일치한다.

이와같이 공원의 접근거리개념은 밀도 100인/ha 에서 적용되지 밀도가 높아지면 이 거리 개념은

4) 도시계획연구회 (1994), 도시계획 텍스트북, 대우출판사 p.156

변경되어야 한다.

3. 광주시 도시공원 공급현황과 타 직할시와의 비교

1) 광주시 도시공원 공급현황

광주시의 근린공원은 50개소이며 조성 및 조성 중인 공원은 <표 4>와 같이 총 17개소이며 33개소가 미조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공원은 총 152개소 중 110개소가 조성 및 조성중이며 42개소가 미조성 되어 있다. <표 5> 구별 도시공원의 변화에 서와 같이 '90년도에서 '94년도에 이르는 기간중 근린공원에서 14개소의 증가와 어린이 공원에서 61개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중의 1인당 공원 면적의 증감은 오히려 90년도의 10.43㎡/人에서 94년도의 10.41㎡/人으로 감소되어 공원의 양적증가가 광주시 인구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 광주시 도시공원(근린, 어린이 공원) 공급 현황

구분	계		조성		조성중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근린공원	50	12660234	10	2334397	7	604479	33	9721538
어린이공원	152	350260	80	192214	30	70171	42	87875

자료 : 93. 11 광주직할시 녹지과

광주의 1인당 공원면적은 <표 5>와 <그림 2>에서와 같이 80년 9.89㎡, 85년 10.17㎡, 90년 10.43㎡로 증가현상을 보이다 94년 10.41㎡로 둔화 되고 있다. 80년후 14년동안 1인당 공원면적은 0.5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94년 현재 1인당 조성면적이 2.14㎡임을 고려할때 80년후 실질 조성면적의 증가는 1.53㎡이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난 수십년동안 도시공원 면적의 증가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와서 1950년 1인당 공원 면적 1.61㎡/人, 1960년 2.1㎡/人, 45년 2.7㎡/人, 1972년 2.9㎡/人으

- 5) 高原策重 (1986), 도시녹지의 계획, 鹿島出版會, p51
- 6) 東京都 (1992), 제3차 동경장기계획, 東京都 p57
- 7) 토지개발공사 (1987), 주택단지개발총람, 토지개발공사 p9

로 꾸준한 증가를 보였고⁵⁾ 동경은 1인당 1919년 1.15㎡/人에서 1973년 1인당 2.0㎡에서 1990년 1인당 4.0㎡로 증가하였으며 21세기까지는 6㎡를 목표로 하고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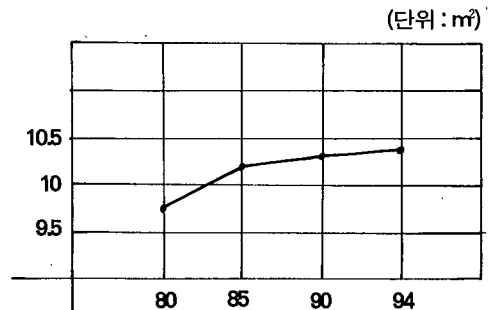
<표 5> 광주직할시 구(區)별 도시공원의 변화

구분	구칭별 년도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비고(인)	1인당공원면적
		㎡(개소)	㎡(개소)	(인구변화)	(㎡)
계	80	8,368,300(23)	98,454(43)	856,009	9.89
	85	10,486,007(34)	111,543(51)	1,042,000	10.17
	90	11,740,691(36)	199,572(91)	1,144,695	10.43
	94	12,660,234(50)	350,259(152)	1,248,670	10.41
동구	80	182,720(2)	5,700(2)	213,741	0.88
	85	182,720(2)	5,700(2)	223,219	0.84
	90	182,720(2)	5,700(2)	191,802	0.98
	94	182,720(2)	14,600(5)	167,096	1.18
서구	80	2,489,500(11)	15,100(7)	290,046	8.63
	85	2,538,267(15)	22,600(12)	382,957	6.69
	90	2,538,267(15)	61,500(27)	478,035	5.43
	94	2,427,472(15)	84,315(36)	464,606	5.4
북구	80	2,941,040(6)	64,405(26)	223,840	13.42
	85	4,561,740(11)	69,985(29)	299,933	15.44
	90	5,741,740(12)	115,323(52)	353,112	16.59
	94	6,115,836(16)	157,478(71)	425,353	14.75
광산구	80	2,755,100(4)	13,249(8)	128,854	21.48
	90	3,277,964(7)	13,249(8)	121,746	27.03
	94	3,934,206(17)	93,866(40)	191,615	21.02

자료 :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서, 1981~1991

북구통계연보, 1993 동구통계연보, 1993
서구통계연보, 1993 광산구통계연보, 1993

(근린+어린이 공원)의 변화



(그림 2) 광주시 1인당 공원면적

2) 광주의 공원현황과 타 직할시와의 비교

광주시의 공원 조성 현황(조성, 미조성 제외)을 살펴보면 근린공원 50개소중 10개소가 조성되어 면적으로 환산하며 18.4%이며 이 비율은 4대 직할시중 최고의 조성율을 보이며 어린이 공원 면적에 대한 조성비율도 54.9%로 대전시, 대구시 다음으로의 수치이다.

도시별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면적을 합한 공원 면적의 1인당 면적을 계획 면적과 조성면적으로 구분하여 나열하여 보면 <표 7>과 같이 광주시는 계획 면적에 대한 1인당 공원면적에서도 10.41㎡/人으로 대전시의 8.26㎡/人, 인천시의 3.848㎡/人과 대구의 3.21㎡/人보다 월등히 높으며 조성 면적에 대한 1인당 공원 면적은 1인당 2.14㎡로 대구, 인천과 대전의 1인당 조성면적에 비하여 2~4배의 높은 조성 면적량을 보이고 있어 타도시보다 공원공급의 혜택에 있어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6> 광주의 공원현황과 대전, 인천, 대구와의 비교 분석

단위 : ㎡, 개소

인구	도시명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2,282,000	대구시 92년	14,542,000/ 18,656,000(1/2)	2,321,000/ 69,906,000 3.3%(12/31)	226,000/334,000 (127/162) 67.7%
1,117,000	대전시 93년	6,014,000/ 25,513,095(1/5)	408,584/890,267 4.6%(10/36)	229,667/325,186 (120/153) 70.6%
2,057,000	인천시 93년	0/19,154,000 (0/9)	913,000/623,000 1.47%(18/58)	334,000/945,000 (100/185) 35.3%
1,179,000	광주시 93년	26,640,000/ 27,030,000(1/1)	2,334,397/ 12,660,234 18.4%(10/50)	192,214/350,260 (80/152) 54.9%

자료 : 92년, 공원유원지 현황, 대구직할시 (조성공원 전체공원)
 93년, 도시공원현황, 인천직할시
 93년, 공원조성관리, 대전직할시
 93년, 공원 및 유원지 현황, 광주직할시

광주시의 근린 공원 조성율은 면적으로 환산하여 18.4%로서 이는 대구의 3.3%, 대전시 4.6%, 인천시 1.47%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조성되어 있

<표 7> 도시별 공원면적과 1인당

	공원면적(근린공원 어린이공원)		1인당 공원면적		인구 (人)
	계획면적(㎡)	조성면적(㎡)	계획면적(㎡)	조성면적(㎡)	
대구	7,332,000	2,547,000	3.21	1.12	2,282,000
대전	9,226,453	638,251	8.26	0.57	1,117,000
인천	7,148,000	1,247,000	3.48	0.61	2,057,000
광주	13,010,494	2,526,611	10.41	2.14	1,179,000

는 수준이며, 인구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2.14㎡로서 4개 직할시중 가장 높은 조성면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계획면적으로 환산하여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만을 포함한 1인당 공원면적은 10.41㎡로 대구, 대전, 인천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광주시의 공원 조성 면적이 높은 것은 광주시가 계획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타도시에 비하여 택지개발면적이 넓은것에 기인한다.⁷⁾ 근린 공원으로 지정된 50개소 공원중 조성, 조성중인 공원은 17개소로서 33개소가 아직 공원기본계획조차 수립도 못한 실정이며 어린이 공원은 총 152개소로서 110개 공원이 조성, 조성중이며, 42개소 공원이 미조성되어 지정만 공원으로 지정된 실정이다.

4. 공원공급의 분류

공원이 지정 조성, 조성중, 일부조성등 모든 공원을 포함 광주시의 공원공급을 크게 4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 1) 도시계획에 의하여 市에서 공급한 공원
 - ① 市 조성
 - ② 민자유치조성
 - ③ 미 조성
- 2)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공원공급
 - ①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한 공원
 - ②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원
 - ③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한 공원
- 3) 공단개발에 의한 공원공급
 - ① 토지개발공사
 - ② 市
-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공원공급
 - ① 토지개발공사

② 市

공급주체별 근린공원을 분류하면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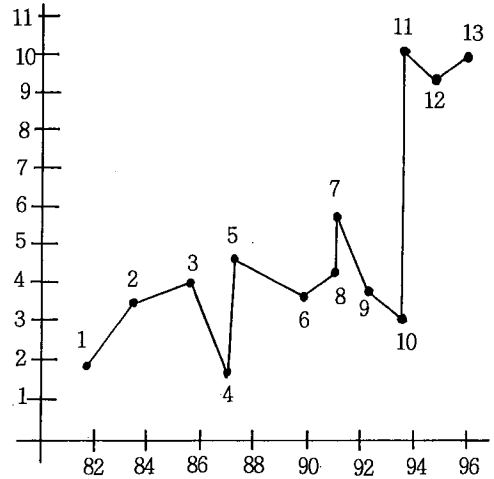
*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공원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공원의 분류는 <표 9>와 같다. <표 10>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어린이 공원의 세부 분류이다.

<표 8> 공급주체별 근린공원 분류

공급주체	근린공원수 (개 수)	어린이공원수 (개 소)	근린공원면 (㎡)	어린이공원 면적(㎡)	비 고
토 개 공	12	39	905,966	107,422	택지개발사업
주 택 공	2	11	23,700	25,260	"
도 시 공	0	10	0	22,507	"
市	0	42	0	110,669	구획정리사업
토 개 공	0	8(2)	0	13,250(3,320)	구획정리사업
토 개 공	1	0	43,180	0	공단조성사업
市	5	0	163,083	0	공단조성사업
市	30(26)	42(38)	11,422,001 (8,530,341)	80,536 (70,494)	도시계획
계	50	152	1,223,785	350,260	

()미조성

공원
면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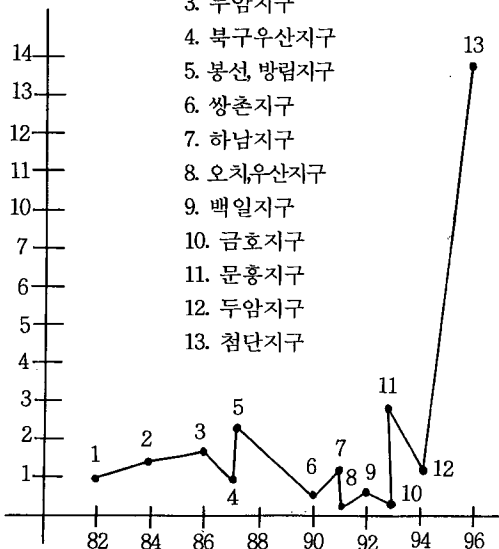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공원면적의 변화 추이

광주시 근린공원은 92년도 전에 조성된 공원은 <표 9>에서와 같이 1인당 2㎡를 넘지 않고 있으며 공원율도 5%를 넘지 않고 있다.

1인당 공원량은 도시공원법에서 요구하는 1인당 3㎡를 근접하고 넘는 공원은 토개공에서 조성하는 문흥지구의 2.93㎡와 첨단지역의 1인당 14.73㎡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규정하는 공원면적의 변화는 82년 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94년 조성된 두암지구와 비교하면 공원면적에서 12년동안 4.5배의 증가를 보였으나 1인당 공원면적에는 별도 1.42/1.17 ≒ 1.21로서 21%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때 공원면적의 증가가 유입인구 밀도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조성된 오치우산지구(91년), 백일지구(92년)과 금호지구(93년)의 1인당 공원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주변에 21호공원의 우산공원이 지정(조성않됨)되어 있고 백일, 금호지구에서도 주변에 중앙공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표 2>에서와 같이 Apt지구에서 유치 거리 500m이내에 공원으로 고시 지정만되고 개발이 안된 경우에도 공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서 단지개발업체에 도시시설로서의 공원조성을 단지에서 면제하여 그 범규의

1인당
공원량

1. 송정지구
2. 염주지구
3. 두암지구
4. 북구우산지구
5. 봉선 방림지구
6. 쌍촌지구
7. 하남지구
8. 오치우산지구
9. 백일지구
10. 금호지구
11. 문흥지구
12. 두암지구
13. 첨단지구



(그림 3)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연도별 공원량의 추이

<표 9> 광주직할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원공급 현황

근린 갯수	어린이 갯 수	완성 년도	지 구	공원율 (%)	공 원 면 적	개 발 면 적	유 입 인 구	1인당공원 율(m ²)	공급주체
0	8	82	송정지구	2.0	13,250	651,674	11,360	1.17	토 개 공
1	5	84	염주지구	3.4	17,963	534,423	14,100	1.27	"
0	3	86	두암지구	3.8	6,588	173,565	4,000	1.65	"
0	2	87	북구우산	2.3	3,412	234,233	4,100	1.32	"
1	5	87	봉선,방림	4.9	22,065	454,825	11,400	1.94	"
1	12	93	문흥지구	9.9	114,105	1,154,503	38,885	2.93	"
6	2	95	첨단지구	9.4	736,995	7,828,476	(50,003)	14.73	"
0	2	90	쌍촌지구	3.5	11,492	328,573	14,584	0.79	"
2	8	91	하남지구	5.1	91,620	1,807,385	59,337	1.54	"
0	5	91	오치,우산	4.0	10,620	266,255	17,512	0.61	주 공
2	6	94	두암지구	8.9	38,340	432,610	26,992	1.42	"
0	2	92	백일지구	3.5	3,159	90,600	4,540	0.70	도 시 공
0	8	93	금호지구	3.0	19,348	432,214	33,600	0.58	"

자료 : 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 1994
 주택공사 전남지사, 1994
 광주시 도시개발공사, 1994
 광주시청 도시계획국, 1994

<표 1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행 처	지 구 별	개발면적	어 린 이 공원면적	공원수	완성년도	공원율	1 인 당 공 원 량	유 입 인 구
광주 시	① 제1지구	1,451,755	5,016	2	1965	0.3%	N/A	N/A
광주 시	② 제2지구	1,226,347	5,154	2	1971	0.42%	N/A	N/A
광주 시	③ 제3지구	2,542,181	10,449	5	1971	0.41%	N/A	N/A
광주 시	④ 광송지구	1,151,431	4,660	2	1973	0.40%	N/A	N/A
광주 시	⑤ 제4지구	2,034,426	21,425	6	1976	1.05%	N/A	N/A
광주 시	⑥ 제5지구	1,406,496	11,636	5	1982	0.83%	N/A	N/A
광주 시	⑦ 제6지구	546,446	6,532	3	1982	1.20%	N/A	N/A
토개공	⑧ 광산1지구	651,674	13,250	8	1983	2.03%	1.17m ²	11,360
광주 시	⑨ 제7지구	372,691	7,340	4	1989	1.97%	N/A	N/A
광주 시	⑩ 제8지구	611,314	12,414	6	1989	2.03%	N/A	N/A
광주 시	⑪ 제9지구	288,225	8,722	5	1994	3.03%	1.04m ²	8,380
광주 시	⑫ 제10지구	101,899	4,071	2	1994	4.00%	2.70m ²	1,505

자료 : 광주시 도시 정비과, 1994 N/A : 자료 없음

악영향은 1인당 공원면적량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 도시계획에 의한 市에서 공원공급
 <표 8>에서 처럼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정 공급된

〈표 11〉 광주직할시 공원지표 (어린이 인구 3~12세)

동 번 호	동명	총면적 (A)	총인구 (B)	어린이 인구 (C)	근린공원 면적 (D)	어린이공원 면적 (E)	근린공원 적정량 (F)	어린이공원 적정량 (G)	근린공원 충족량 D/F	어린이공원 충족량 E/G	공원충족량 D+E/F+G
001	대금동	0.29	4,137	597	0	0	8,724	398	0	0	0
002	충수동	0.15	2,311	365	0	0	4,622	243	0	0	0
003	대의동	0.26	2,853	404	0	0	5,706	269	0	0	0
004	동명1동	0.28	6,534	852	0	0	13,068	568	0	0	0
005	동명2동	0.13	4,561	570	0	0	9,122	380	0	0	0
006	계림1동	0.40	9,307	1,277	0	0	18,614	851	0	0	0
007	계림2동	0.14	5,153	696	0	0	10,306	464	0	0	0
008	계림3동	0.42	9,751	1,261	0	0	17,502	841	0	0	0
009	산수1동	0.24	5,212	700	0	0	10,424	467	0	0	0
010	산수2동	0.42	13,074	1,767	12,500	2,700	26,148	1,178	47.8%	229%	1.8
011	산수3동	0.58	14,945	2,047	0	6,700	29,870	1,365	0	491%	4.66
012	지산1동	0.80	7,162	818	0	0	14,324	545	0	0	0
013	지산2동	1.60	13,007	1,790	0	0	26,014	11,093	0	0	0
014	남금동	0.25	4,880	735	0	3,000	9,760	490	0	612%	3.42
015	충금동	0.21	1,757	239	0	0	3,514	159	0	0	0
016	삼성동	0.20	1,995	262	0	0	3,990	175	0	0	0
017	서석동	1.09	5,296	718	0	0	10,592	479	0	0	0
018	학1동	0.62	4,503	576	0	0	9,006	384	0	0	0
019	학2동	0.30	4,710	526	0	0	9,420	351	0	0	0
020	학3동	0.44	7,016	958	0	0	14,032	639	0	0	0
021	학운동	11.13	13,700	2,000	0	2,200	27,400	1,333	0	165%	13.06
022	지원동	28.72	25,616	4,238	0	0	51,232	2,825	0	0	0
023	양림동	0.61	10,820	1,457	53,750	0	21,640	971	248%	0	0.42
024	방림1동	0.57	8,910	1,269	0	0	17,820	846	0	0	0
025	방림2동	2.93	26,499	4,274	47,500	7,488	52,998	2,849	89.6%	262.8%	1.02
026	사구동	0.28	1,242	510	105,000	0	2,484	340	0	0	0
027	서1동	0.16	1,269	706	0	0	2,538	471	0	0	0
028	서2동	0.17	1,588	826	0	0	3,176	551	0	0	0
029	양1동	0.30	1,769	896	33,750	0	3,538	597	953.9%	0	0.12
030	양2동	0.24	2,001	791	0	0	4,002	527	0	0	0
031	양3동	0.29	2,528	1,366	64,583.3	0	5,056	911	1277.4%	0	0.09
032	월산1동	0.27	2,074	953	0	0	4,148	635	0	0	0
033	월산2동	0.39	2,951	1,510	0	0	5,902	1,007	0	0	0
034	월산3동	0.28	1,932	971	0	0	3,864	647	0	0	0
035	월산4동	0.59	5,859	3,321	0	1,212	11,718	2,214	0	54.7%	11.50
036	월산5동	0.49	4,108	2,265	0	2,263	8,216	1,510	0	149.9%	4.30
037	농성1동	0.67	4,331	2,365	0	2,084	8,662	1,577	0	132.2%	4.91
038	농성2동	0.65	3,325	1,623	0	2,152	6,650	1,082	0	198.9%	3.59
039	백운1동	0.47	3,887	2,055	0	0	7,774	1,370	0	0	0
040	백운2동	0.49	3,867	2,011	0	0	7,734	1,341	0	0	0

<표 11> 계속

동 번 호	동명	총면적 (A)	총인구 (B)	어린이 인 구 (C)	근린공원 면 적 (D)	어린이공원 면 적 (E)	근린공원 적 정 량 (F)	어린이공원 적 정 량 (G)	근린공원 충 족 량 D/F	어린이공원 충 족 량 E/G	공원충족량 D+E/F+G
041	주월1동	1.62	9,043	5,539	0	3,406	18,086	3,693	0	92.2%	6.39
042	주월2동	1.25	4,329	2,880	0	0	8,658	1,920	0	0	0
043	효덕동	8.60	5,395	3,489	0	3,000	10,790	2,326	0	129.0%	4.37
044	송암동	6.82	1,226	751	0	0	2,452	501	0	0	0
045	광천동	0.98	4,678	2,447	0	0	9,356	1,631	0	0	0
046	유덕동	3.24	2,377	1,146	0	0	4,754	764	0	0	0
047	상무1동	2.74	4,147	2,580	0	1,487	8,264	1,720	0	86.5%	6.71
048	상무2동	1.87	8,725	5,097	0	9,731	17,450	3,398	0	287.4%	2.14
049	화정1동	2.47	5,842	3,313	0	9,824	11,684	2,209	0	444.7%	1.41
050	화정2동	3.20	6,620	4,123	0	1,500	13,240	2,749	0	54.6%	10.66
051	화정3동	0	13,029	10,096	0	17,254	26,058	6,731	0	256.3%	1.90
052	봉선동	0	11,144	823	10,000	13,304	22,288	549	44.9%	2423.3%	0.98
053	증흥1동	0.63	10,052	1,425	0	2,056	20,104	950	0	216.4%	10.24
054	증흥2동	0.50	18,248	2,593	0	7,734	36,496	1,729	0	447.3%	4.94
055	증흥3동	0.55	14,713	2,111	0	0	29,426	1,407	0	0	0
056	유동	0.34	5,602	915	0	0	11,204	610	0	0	0
057	누문동	0.18	2,183	351	0	0	4,366	234	0	0	0
058	복동	0.22	3,637	584	0	0	7,274	389	0	0	0
059	임동	1.23	16,949	2,571	0	0	33,898	1,714	0	0	0
060	신안동	1.29	22,689	3,385	0	6,778	45,378	2,257	0	300.3%	7.03
061	용봉동	3.07	29,715	4,767	0	16,964	59,430	3,178	0	533.8%	3.69
062	동운1동	1.35	21,872	4,002	1,003,650	1,800	43,744	2,668	2,294.3%	67.5%	0.05
063	동운2동	1.20	25,593	4,049	272,500	9,803	51,186	2,699	532.4%	363.2%	1.45
064	동운3동	4.73	28,509	6,283	0	0	57,018	4,189	0	0	0
065	우산동	1.02	31,498	4,998	92,500	11,504	62,996	3,332	146.8%	345.3%	0.64
066	풍향1동	0.35	11,179	1,511	0	2,454	22,358	1,007	0	243.7%	9.52
067	풍향2동	0.43	5,809	841	0	0	11,618	561	0	0	0
068	문화동	6.13	37,725	6,854	35,416.7	27,385	75,450	4,570	46.9%	599.2%	1.27
069	두암1동	1.94	41,168	7,759	250,000	16,964	82,336	5,172	303.6%	328.0%	0.33
070	두암2동	1.67	25,038	4,433	13,750	11,139	50,076	2,955	1,385.4%	377.0%	2.13
071	서산동	11.22	43,172	8,576	693,750	27,294	86,344	5,718	803.5%	477.3%	0.13
072	충효동	20.46	1,178	134	0	0	2,356	89	0	0	0
073	청옥동	17.77	1,852	216	0	0	3,704	144	0	0	0
074	장운동	10.07	1,559	180	0	0	3,118	120	0	0	0
075	본촌동	13.30	20,985	3,760	792,500	15,600	41,970	2,506	1,888.3%	622.5%	0.05
076	우치동	14.78	3,440	390	957,500	0	6,880	260	13,917.2%	0	0.01
077	삼소동	6.65	1,214	142	0	0	2,428	94	0	0	0
078	송정1동	0.84	7,380	1,142	0	0	14,760	761	0	0	0
079	송정2동	0.67	5,333	759	0	0	10,666	506	0	0	0
080	송정3동	1.06	4,295	593	0	2,000	8,590	395	0	506.3%	4.49

(표 11) 계속

동 번 호	동명	총면적 (A)	총인구 (B)	어린이 인 구 (C)	근린공원 면 적 (D)	어린이공원 면 적 (E)	근린공원 적 정 량 (F)	어린이공원 적 정 량 (G)	근린공원 충 족 량 D/F	어린이공원 충 족 량 E/G	공원충족량 D+E/F+G
081	도산동	2.56	9,314	1,560	0	6,071	18,628	1,040	0	5838%	3.24
082	신흥동	6.34	5,689	861	373,750	0	11,378	574	3,284.9%	0	0.03
083	용운동	15.12	3,054	461	0	2,000	6,108	307	0	651.5%	3.21
084	소촌동	2.62	7,366	1,351	150,000	5,320	14,732	901	1,018.2%	590.5%	0.10
085	우산동	3.46	34,047	7,467	0	25,430	68,094	4,978	0	510.9%	2.87
086	월곡동	1.87	37,898	7,969	75,000	9,799	75,796	5,312	99.0%	184.5%	0.96
087	비아	21.19	17,194	2,669	0	20,460	34,388	1,779	0	1,150.1%	1.77
088	하남	17.97	4,328	557	43,750	0	8,656	371	505.4%	0	0.21
089	임곡	31.30	4,494	455	0	0	8,988	303	-	0	0
090	동곡	15.52	4,128	483	0	0	8,256	322	0	0	0
091	평동	29.15	7,428	810	75,000	4,438	14,856	549	504.9%	808.4%	0.19
092	삼도	38.76	5,031	515	0	0	10,062	343	0	0	0
093	본양	33.47	2,271	355	0	0	4,542	237	0	0	0
094	대촌	35.89	5,090	1,231	0	0	10,180	821	0	0	0
095	서창	27.73	9,950	3,324	0	18,348	19,900	2,216	0	828.0%	1.21

근린공원 30개소중 26개소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미조성 지역이며 조성
된 곳은 광주공원, 사직, 중의 및 천변공원 4곳에
불과하며 면적으로 2,882,730m²이다. 또한 어린이
공원은 市에서 지정 공급한 42개소중 38개소 어
린이 공원이 미조성되어 있고 조성된 곳은 4개소
인 용동, 도산제2, 무량공원, 오치제1공원으로 면
적으로 10,042m²이다.

*** 공단개발에 의한 공원의 현황**

공단개발에 의한 공원의 공급은 토개공에서 공급
한 하남공원과 市에서 공급한 안청, 용동, 옥동제
1, 옥동제2, 월전공원 5개소 공급주체별 43,180m²
과 16,083m²이다.

***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공원의 공급**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공원공급은 광주시가
11곳을 그리고 토개공이 1개소를 아래와 같이 공
급하였다. 근린공원은 1개도 공급이 없되었고, 모
두 어린이 공원으로 토지구획정리법에서 요구하
는 공원면적량 3%를 넘긴것은 1994년 이후이며
1인당 3m²의 도시공원법에서 요구하는 양을 넘기
지 못하고 있다.

5. 공원지표의 추출 (The Index for Park)

공원의 지표로서 총면적, 인구, 아동인구, 어린
이. 공원면적, 근린공원면적의 양을 조사하여 인
구 밀도, 아동밀도, 공원적정량, 공원부족량과 공
원충족율을 산정하였다.

河野와 北岡(1987)은 그의 논문에서 어린이 공원
지표로서

- ①아동수, ②인구, ③小學區면적, ④아동밀도, ⑤
인구밀도, ⑥町內會數, ⑦町內會人口로 규정하였
었다.

단위지역의 공원 적정량은 谷口之成이 적용한 공
원수요량 산정시의 계수기준(황,1990)을 사용하
다.

$$P = \sum \frac{N_i \times A_i \times S_i}{C_i}$$

N_i : 공원유형별 이용자수 (근린공원 1, 어린이
공원 0.8)

S_i : 공원이용자 1인당 활동 면적 (근린공원
50m², 어린이공원 25m²)

A_i : 공원유형별 이용율 (0.02)

C_i : 유효면적율 (60%)

6. 공원공급의 불평등값의 파악과 공원 공급지 수 및 공급규모제시

공원공급의 불평등값의 산정은 앞서 총족량, 적정량등이 인구개념과 공원량 개념만 들어 있고 밀도개념이 없으므로 밀도개념을 도입하여 공원 공급의 불평등값의 파악과 공원공급지구와 공급 규모를 제시하면 오(1992)의 산정방식을 따라 공 원면적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놓고 洞의 면적, 洞인구, 洞아동인구, 洞의 근린공원, 洞의 어린이 공원 면적과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 원을 합한 공원면적들을 변수로 놓고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통한 회귀잔차 량과 공급지수를 산정하면 (그림 5)와 같다.

각변수간의 상관성분석은 변수 SOA(동의 면 적), TPA(동의 인구), POC(동의 어린이 인구), TSN(동의 근린공원면적), TSC(동의 어린이공원 면적),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합한 공원면적 (TSPC)간의 상관성 분석은 <표 12>와 같다.

<표 12> 각 변수간의 상관성분석

CHILDREN PARK PROVISION	03/22/95							
FILE	NONAME (CREATION DATE = 06/22/95)							
	SOA	TPA	POC	TSN	TSC	NPC	CPC	TSPC
SOA	1.0000 (0) P=*****	-0.0102 (.95) P=0.922	-0.0901 (.35) P=0.335	0.0902 (.95) P=0.335	0.0818 (.75) P=0.431	-0.0102 (.35) P=0.922	-0.0761 (.95) P=0.454	0.0923 (.95) P=0.374
TPA	-0.0102 (.95) P=0.922	1.0000 (0) P=*****	0.5977 (.35) P=0.000	0.3060 (.35) P=0.003	0.7463 (.35) P=0.000	1.0000 (.75) P=0.000	0.2150 (.95) P=0.000	0.3298 (.95) P=0.001
POC	-0.0901 (.35) P=0.335	0.5977 (.25) P=0.000	1.0000 (0) P=*****	0.0495 (.95) P=0.633	0.5342 (.35) P=0.000	0.5977 (.95) P=0.000	0.3417 (.95) P=0.000	0.0688 (.95) P=0.535
TSN	0.0902 (.95) P=0.335	0.3060 (.35) P=0.003	0.0495 (.35) P=0.533	1.0000 (0) P=*****	0.2314 (.35) P=0.024	0.3060 (.95) P=0.003	0.2195 (.95) P=0.033	0.9994 (.95) P=0.000
TSC	0.0818 (.75) P=0.431	0.7463 (.35) P=0.000	0.5342 (.35) P=0.000	0.2314 (.35) P=0.024	1.0000 (0) P=*****	0.7463 (.95) P=0.000	0.7439 (.95) P=0.000	0.2646 (.95) P=0.009
NPC	-0.0102 (.95) P=0.922	1.0000 (.35) P=0.000	0.5977 (.35) P=0.000	0.3060 (.95) P=0.003	0.7463 (.35) P=0.000	1.0000 (0) P=*****	0.3150 (.95) P=0.000	0.3298 (.95) P=0.001
CPC	-0.0761 (.35) P=0.454	0.2150 (.95) P=0.000	0.3417 (.35) P=0.000	0.2195 (.75) P=0.033	0.7439 (.35) P=0.000	0.3150 (.35) P=0.000	1.0000 (0) P=*****	0.2440 (.95) P=0.017
TSPC	0.0923 (.35) P=0.374	0.3298 (.95) P=0.001	0.0688 (.35) P=0.533	0.9994 (.35) P=0.000	0.2646 (.95) P=0.009	0.3298 (.95) P=0.001	0.2440 (.95) P=0.017	1.0000 (0) P=*****

(COEFFICIENT / (CASES) / SIGNIFICANCE) (A VALUE OF 99.0000 IS PRINTED IF A COEFFICIENT CANN

7. 공원공급에 있어 불평등한 Disadvantage한 지역의 분포현상

a) 지리적 분포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화정1, 농성1, 임동, 양 동, 월산4, 주월동 일대가 불평등한 지역으로 (그 림 6)과 같다.

b) 계량적 분포

● 지리적 취약지역

근린공원에서 법정 접근거리 500m이내 떨어진 곳을 적정접근지역, 500m~ 1000m이상 떨어져 있는 곳을 1차 접근지역으로 설정하고 1차접근지 역을 벗어난곳을 취약지역으로 하여 취약지역의 면적을 행정단위 동(洞)별, 구(區)별 측정분류한 결과 <표 13>과 같이 표현된다.

광주시 4개의 區중에서,

동구의 지역중 산수 3동을 제외하고 모든지역 이 취약지역으로 설정되며 서구의 경우 1차접근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곳이 30개동중 월산5동,

CHILDREN PARK PROVISION

09/22/74

FILE NONAME (CREATION DATE = 08/22/74)

***** MULTIPLE REGRESSION *****

DEPENDENT VARIABLE.. TS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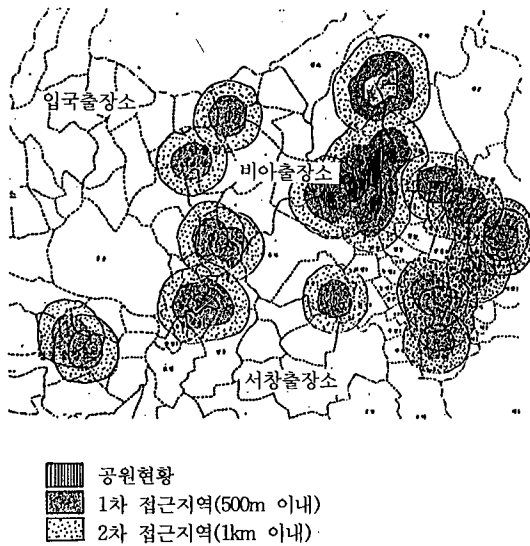
CASEWISE PLOT OF STANDARDIZED RESIDUAL

SEQNUM	TSPC	#PRED	#RESID	*RESID	*SDRESID
1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2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3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4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5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6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7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8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9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10	1500.0000	15733.4471	-5533.4471	-0.0844	-0.0839
11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12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13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14	3000.0000	4129.9072	-4129.9072	-0.0206	-0.0204
15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16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17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18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19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20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21	2200.0000	3129.9072	-3129.9072	-0.1472	-0.1464
22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23	5375.0000	57129.9072	-4129.9072	-0.5593	-0.5583
24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25	54983.0000	51023.3283	3854.6411	0.6271	0.6250
26	2.1050E+06	0.1070	-3999.6424	-0.6329	-0.6308
27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28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29	33750.0000	37129.9072	-3129.9072	-0.4953	-0.4933
30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31	64583.0000	68247.6606	-3564.6606	-0.5797	-0.5776
32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33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34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35	1212.0000	3129.9072	-3129.9072	-0.3053	-0.3020
36	2263.0000	3129.9072	-866.9072	-0.1372	-0.1355
37	2084.0000	3129.9072	-1045.9072	-0.1655	-0.1644
38	2154.0000	3129.9072	-977.9072	-0.1547	-0.1539
39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40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41	3405.0000	3129.9072	-176.0928	-0.0537	-0.0536
42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43	3000.0000	3129.9072	-129.9072	-0.0206	-0.0204
44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45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46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47	1487.0000	3129.9072	-1642.9072	-0.2600	-0.2587
48	973.0000	3129.9072	6401.0928	1.0446	1.0451
49	1864.0000	3129.9072	6694.0928	1.0993	1.0990
50	1500.0000	3129.9072	-1472.9072	-0.2579	-0.2566
51	17254.0000	13212.7311	10091.2609	1.5266	1.5261
52	23304.0000	3129.9072	-1673.9072	-0.1699	-0.1691
53	7732.0000	3129.9072	-4504.0928	-0.7286	-0.7267
54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55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56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57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58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59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60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61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62	1576.0000	0.1129	-9643.3374	-1.8192	-1.8188
63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64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65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66	3.1025E+05	35591.5509	7441.0391	1.2043	1.2077
67	2.55E+05	3129.9072	-675.9072	-0.0553	-0.0553
68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69	62401.0000	38839.2647	-1961.7353	-0.7902	-0.7902
70	14319.0000	0.4355E+06	11763.2946	1.8723	1.8723
71	5.7213E+05	16943.3383	7295.5131	1.2492	1.2530
72	0.0000	3129.9072	-18417.8278	-3.2293	-3.2293
73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74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75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76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77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78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79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80	2001.0000	3129.9072	-1129.9072	-0.1788	-0.1779
81	5071.0000	3129.9072	-241.0928	-0.4654	-0.4634
82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83	2000.0000	3129.9072	-1129.9072	-0.1788	-0.1788
84	0.1523E+06	0.1544E+06	947.6139	0.1501	0.1493
85	75430.0000	3129.9072	22300.0928	3.2289	3.2289
86	84799.0000	78751.1466	16047.8534	0.9566	0.9562
87	23660.0000	47472.2958	-3439.0288	-0.4424	-0.4424
88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89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90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91	7943.0000	73751.1466	-686.8534	-0.1086	-0.1081
92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93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94	0.0000	3129.9072	-3129.9072	-0.4953	-0.4933
95	1934.0000	3129.9072	-15218.0928	-2.4982	-2.4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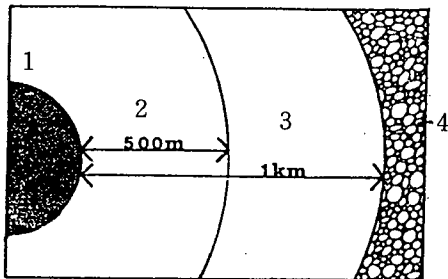
(그림 5)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잔차 및 공급지수 산정

(표 13) 지리적 취약지의 계량적 분포

동 별	동면적 (km ²)	공원면적 (m ²)	직정접근면적 (km ²)	차접근면적 (km ²)	취약지역 (km ²)	동 별	동면적 (km ²)	공원면적 (m ²)	직정접근면적 (km ²)	차접근면적 (km ²)	취약지역 (km ²)
대금동	0.29	0	0	0	0.29	화정1동	2.46	0	0	0	2.46
충수동	0.15	0	0	0	0.15	화정2동	1.02	0	0.01	0.29	0.72
대의동	0.26	0	0	0	0.26	화정3동	1.05	13,750	0.09	0.73	0.22
동명1동	0.28	0	0	0	0.28	봉선동	2.23	10,000	0.09	0.47	1.66
동명2동	0.13	0	0	0	0.13	중흥1동	0.63	0	0	0	0.63
계림1동	0.40	0	0	0	0.40	중흥2동	0.50	0	0	0	0.50
계림2동	0.14	0	0	0	0.14	중흥3동	0.55	0	0.05	0.11	0.39
계림3동	0.42	0	0	0	0.42	유동	0.34	0	0	0	0.34
산수1동	0.24	0	0	0.01	0.23	누문동	0.18	0	0	0	0.18
산수2동	0.42	12,500	0.11	0.20	0.10	북동	0.22	0	0	0	0.22
산수3동	0.58	0	0.04	0.16	0.38	임동	1.23	0	0	0	1.23
지산1동	0.80	0	0	0	0.80	신안동	1.29	0	0	0	1.29
지산2동	1.60	0	0	0	1.60	용봉동	3.07	0	0.11	0.36	1.60
남금동	0.25	0	0	0	0.25	동운1동	4.37	1,003,650	0.86	1.84	0.69
충금동	0.21	0	0	0	0.21	동운2동	1.20	272,500	0.14	0.56	0.23
삼성동	0.20	0	0	0	0.20	동원3동	10.0235	0	0	0	1.35
서석동	1.09	0	0	0	1.09	우산동	1.02	92,500	0.01	0.22	0.70
학1동	0.62	0	0	0	0.62	풍향1동	0.35	0	0	0.03	0.32
학2동	0.30	0	0	0	0.30	풍향2동	0.43	0	0	0.23	0.20
학3동	0.44	0	0	0	0.44	문화동	6.13	35,416.7	0.04	0.92	5.13
학운동	11.13	0	0	0	11.13	두암1동	1.94	250,000	0.21	0.80	0.68
지원동	28.72	0	0	0	28.72	두암2동	1.67	13,750	0.04	0.48	1.14
양림동	0.61	53,750	0.09	0.33	0.14	서산동	11.22	693,750	0.69	2.83	7.01
방림1동	0.57	0	0.03	0.12	0.42	충효동	20.46	0	0	0	20.46
방림2동	2.93	47,500	0.01	0.11	2.81	청옥동	17.77	0	0	0	17.77
사구동	0.28	105,000	0.01	0.01	0.15	장운동	10.07	0	0	0	10.07
서1동	0.16	25,000	0.03	0.08	0.02	본촌동	13.30	792,500	0.59	1.54	10.38
서2동	0.17	0	0.03	0.23	0.09	우치동	14.78	957,500	1.44	2.54	9.84
양1동	0.30	33,750	0.09	0.15	0.03	삼소동	6.65	0	0	0	6.65
양2동	0.24	0	0	0	0.24	송정1동	0.84	0	0.02	0.43	0.39
양2동	0.29	64,583.3	0	0	0.23	송정2동	0.67	0	0.09	0.11	0.47
월산1동	0.27	0	0	0.12	0.15	송정3동	1.06	0	0	0.24	0.82
월산2동	0.39	0	0.03	0.09	0.27	도산동	2.56	0	0	0	2.56
월산3동	0.28	0	0	0.13	0.15	신흥동	6.34	373,750	0.27	0.68	5.02
월산4동	0.59	0	0	0.15	0.44	용운동	15.12	0	0	0	15.12
월산5동	0.49	0	0	0	0.49	소촌동	2.62	150,000	0.15	0.81	1.51
능성1동	0.67	0	0	0	0.67	우산동	3.46	0	0	0	3.46
능성2동	0.65	0	0	0.11	0.54	월곡동	1.87	75,000	0.30	1.31	0.18
백운1동	0.47	0	0.07	0.13	0.27	비야	21.19	0	0	0	21.19
백운2동	0.49	0	0.02	0.05	0.42	하남	17.97	43,750	0.28	1.35	16.3
주월1동	1.62	0	0.08	0.15	1.39	임곡	31.30	0	0	0	31.30
주월2동	1.25	0	0	0.19	1.06	동곡	15.52	0	0	0	15.52
효덕동	8.60	0	0	0	8.60	평동	29.15	75,000	0.33	1.08	27.66
송암동	6.82	0	0	0	6.82	삼도	38.76	0	0	0	38.76
광천동	0.98	0	0	0	0.98	본양	33.47	0	0	0	33.47
유덕동	3.24	0	0	1.22	2.02	대촌	35.89	0	0	0	35.89
상무1동	2.74	0	0	0.12	2.62	서창	27.73	0	0	0	27.73
상무2동	1.87	0	0	0	1.87						



(그림 6) 지리적분포에 있어서 공원분포



- 동(洞) 경계
- 1: 공원면적
 - 2: 적정접근면적
 - 3: 1차접근면적
 - 4: 취약지역

(그림 7) 근린공원 접근 영역 구분개념도

농성1동, 효덕동, 송암동, 광천동, 상무 2동 및 화정1동으로 비교적 양호하며 북구의 경우 중흥1동, 중흥2동,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신안동, 동운3동, 충효동, 장운동, 삼소동등 11개이다.

광산구의 경우 도산동, 용운동, 동곡, 삼도, 본양, 대촌, 서창등이 공원의 접근성이 완전 결여된곳이다.

8. 공원의 이용

1) 설문을 조사한 공원 성격

공원의 이용평가가 행해지는 지역은 <표 14>에 서와 같이 7개 근린 공원과 5개의 어린이 공원이 다.

표에서와 같이 중의공원과 우치공원은 주거단지 시외곽에 위치한 지구공원 성격을 띤 근린공원이며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은 일제 치하에서 도시계획시 지정된 광주의 가장 오래된 공원이며 산정, 월곡, 봉선공원은 광주의 대표적 주거단지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서 산정은 하남신시가지의 단지안의 낮은 구릉의 주택지와 같은 Level의 높이이나 월곡은 표고 30m정도의 높은 구릉지이다. 어린이 공원의 무량, 쌍촌제2, 봉선제1, 우산 13, 금호제3은 광주시 각 구(區)의 주거단지 안에 산재된 공원이다.

2) 이용평가

① 평가의 목적

도시공원의 이용실태 조사는 다음과 같은 공원 이용자의 성격, 공원이용상황, 공원의 만족도와 도입필요시설 항목들을 돌출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 공원의 이용자의 성격 (주거환경, 주거환경만족도, 직업, 소득, 연령, 접근거리)

* 공원의 이용자의 공원이용 상황 (교통수단, 이용횟수, 동반자, 이용시간, 활동, 이용일)

* 공원의 만족도와 공원의 필요시설 (공원에 대한 만족, 공원의 숫자, 공원의 위치, 도입활동, 도입시설, 접근성, 프라이버시, 조경시설, 안전성, 관리상태, 혼잡도)

② 이용실태조사 방법

a) 설문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공원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기간 및 조사매수 :

- 1회 1993.11.22~27
조사매수 : 380
- 2회 1994. 6.20~25
조사매수 : 356

〈표 14〉 설문을 조사한 공원성격

(단위 : m²)

조사 공원	공원 종류	조성 기관	조성 일자	위치	공원 성격	면적
산정공원	근	토개공	85. 12. 30	주거단지내	일상생활권	43,860
월곡공원		토개공	85. 12. 30	주거단지내	일상생활권	22,460
중외공원	린	광주시	85. 12. 2	주거단지인접	지구공원	3,328,750
우치공원		금호(민자유치)	87. 9. 25	시외곽	지구공원	1,180,000
사직공원	공	광주시	90. 6. 19	도심주변	도보권	85,610
광주공원		광주시	90. 6. 14	도심주변	도보권	43,950
봉선공원	원	토개공	84. 12. 27	주거단지내	일상생활권	10,288
무량공원	어	광주시	86. 6. 4	"	어린이공원	2,200
쌍촌제2공원	린	토개공	87. 11. 29	"	"	2,318
봉선제1공원	이	토개공	86. 8. 9	"	"	1,603
우산13공원	공	주택공	90. 6. 27	"	"	1,701
금호제3공원	원	도시공	91. 9. 19	"	"	1,809

- 조사방법 : 공원에서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조사

- 분석방법 : SPSSVAX 통계 Package를 이용

- 빈도분석
- 교차분석
- 상관성분석

b) 이용자의 설문 종합분석 결과

가. 어린이 공원 이용자

• 접근거리

어린이 공원 이용자 중에 300m이내에서 오는 아동들의 비율이 51.6%로 나타나고 있고, 반경 500m에서 접근하는 아동들의 비율은 71.9%이다.

• 이용횟수

공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52.1%는 일주일에 한번 이용하며, 1개월에 1회 정도 이용 비율은 10.6%임에 반하여 3개월에 한번정도의 이용비율은 9.6%이며 또한 일년에 한번정도의 이용 비율은 10.6%로 나타났다.

• 어린이 공원 만족도

어린이 공원의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스러워 하는 비율은 7.4%이며 만족하는 비율은 23.9%이며,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은 23.4%, 불

만족의 비율은 23.4%이며, 매우 불만족스러운 비율은 21.8%로서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 근린공원 이용자

• 접근거리

근린공원 이용자중 24.9%가 도보로 오는 사람중 100m이내에 살고 있고 100~300m이내에 사는 이용자가 33.9%이며 근린공원 적정거리 500m이내에 오는 사람은 75.4%로서 근린공원의 이용자 대부분이 500m이내에 접근거리에 살고 500~1000m사이의 공원이용자는 4.4%에 불과하였다.

• 이용횟수

근린공원의 42.4%가 1년에 1번, 16.1%가 한달에 2번, 11.3%가 1개월에 1번 정도가 15.5%이다.

• 근린공원에 대한 만족

근린공원에 관하여 매우 만족하고, 만족하는 비율이 (29.8%), 매우 불만족하고 불만족하는 비율 (42%)보다 작아 공원에 관하여 불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 직업에 따른 공원의 만족도

공원이용자중 직업에 따른 만족도 조사에서 공원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직업은 ① 무직(40.6%) ② 학생 (26.2%) ③ 회사원 (14.1%) ④ 공무원

원 (10.5%) ⑤ 자유업 (4.8%) ⑥ 기타 (1.4%)의 순이며, 공원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직업은 ① 학생 (46.7%) ② 회사원 (17.0%) ③ 자유업 (12.2%) ④ 무직 (11.2%) ⑤ 공무원 (7.7%) ⑥ 기타 (2.8%) ⑦ 농업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무직계층이 공원에 대한 만족스러움을 나타냈으며 그와 반대로 학생층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 소득에 따른 공원의 만족도

공원 이용자중 소득에 따른 만족도 조사에서 공원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소득층은 ①소득없음 (64.8%) ②51-80만원 (12.7%) ③81-90만원 (7.8%) ④50만원이하 (6.3%) ⑤111-150만원 (4.2%) ⑥150-200만원 (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소득층은 ①소득없음 (59.5%) ②51-80만원 (13.6%) ③81-110만원 (11.2%) ④111-150만원 (7.5%) ⑤50만원이하 (4.3%) ⑥200만원 이상 (2.2%) ⑦150-200만원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근린공원 교차분석

① 공원까지의 거리와 공원에 오는 횟수와의 관계

500m이내에서 오는 사람들(44.7%)의 공원에 오는 횟수를 살펴보면 공원 500m이내 사는 사람들이 24.9%가 1주일에 한번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500m이외에서 일주일에 한번 오는 이용자 12.0%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② 공원 이용횟수와 주거소유현황과의 관계

자가(60.7%), 전세, 월세 및 기타(39.3%) 구성 비율에서 일주일에 한번오는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59.3%이고 전세, 월세 및 기타 세입자들이 40.7% 임에 비교하여 불매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입자가 공원에 더 자주 온다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한달에 2번(57.7%), 한달에 1번(66.7%)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③ 사용자의 직업과 공원의 만족과의 관계

학생(46.7%)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불만

족하다고 한것이 49.1%로 높고, 그저그렇다는 대답은 48.5%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만족도를 보면 무직(11.2%)가 매우 만족한다라고 한 비율은 54.2%, 다음으로 회사원(17.0%)이 만족하다(20.0%)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학생의 다수는 현재의 공원에 대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 있다고 느끼고 있고, 회사원이나 직장인들은 현재 상태로도 양호하다고 느끼고 있다.

④ 이용자의 소득과 공원의 만족과의 관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이용자는 19.5%로 공원의 만족을 살펴보면, 그저그렇다라는 대답이 51.8%를 나타내며, 200만원 이하의 이용자는 20.2%로 매우불만족하다는 응답이 67.4%를 보인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의 공원 상태에 대해 아주 높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이용자의 연령과 가장 많이 이용한 시설과의 관계

13~20세의 이용자는 전체 29.7%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놀이(43.9%), 그네(50.0%), 운동(47.8%)를 나타냈으며, 30~50세의 이용자는 21.0%로 주로 휴식(17.7%)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주로 유희 시설을 즐기고 연령이 높을수록 휴식, 벤취, 정자들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⑥ 공원의 만족과 공원수와의 관계

공원의 만족에서는 그저그렇다는 응답이 29.7%를 보이고 불만스럽다가 24.3%, 만족이 21.0%를 나타냈다. 공원의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원에 대한 만족이 그저그러하면서 공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4.5%를 보이고 만족하면서 공원수는 부족하다고 한 사람은 23.9%를 나타내고 매우 불만스러우면서 공원의 수도 부족하다는 인식은 24.1%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 어린이 공원 교차분석

① 공원까지의 거리와 공원에 오는 횟수와의 관계

300m이내에 사는 사람(51.6%)의 공원에 오는

횃수를 살펴보면, 1주일에 한번 온다는 것이 36.1%로 높게 나타나 있다. 300m이상 거리에 사는 이용자들의 1주일에 한번 오는 비율이 15.5%임과 비교하여 볼때 공원의 거리와 이용은 강한 상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공원이용횃수와 주거소유 현황과의 관계

공원에 오는 이용자중 자가(64.4%) 전세 및 월세 (35.6%) 구성원중에서 1주일에 한번이상 이 자가(59.2%)이고 어린이공원을 전세 및 월세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40.8%로서 세입자들이 약간 더 자가소유자들 보다 자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사용자의 직업과 공원의 만족과의 관계

학생(44.7%)이 매우 불만족(23.8%)한다고 답했고, 자유업, 회사원(12.2%)가 그저그렇다(47.8%)를 나타냈다. 비교적 공원의 만족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답보다는 그저그렇다라는 반응이 다수를 보이고 있다.

④ 이용자의 소득과 공원의 만족과의 관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사람(23.4%)이 그저그렇다(84.6%)를 나타냈으며, 2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3.2%)가 50.0%으로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결과 고소득자일수록 현재 공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⑤ 이용자의 연령과 시설과의 관계

13세이하가 17%이며, 13~20세가 33.5%를 차지하고 이들이 주로 이용한 시설은 운동 14.3%, 그네 9.5%를 차지하고, 이들의 행태는 놀이 23.5%가 그네, 벤취, 정자가 각각 5.9%이고 주로 어린이는 놀이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13~20세 그룹은 운동시설을 더욱 이용하고 있다.

⑥ 공원의 만족과 공원의 숫자와의 관계

공원의 만족도에서 보면 그저그렇다와 불만족이 각각 23.4%와 45.2%로 나타냈고 만족도 23.9%를 나타냈다.

매우 불만족도도 21.8%나 나타나 있다. 이들과 공원의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저그렇다라는 반응이 공원의 수도 부족하다고 36.4%나 응답했다. 공원이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한 사람은 공원의 수도 매우 부족하다고 51.2%나 반응을 보

였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공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상관성분석

공원이용횃수와 공원이용거리는 상관계수 C값이 0.4806으로 강한 상관성을 보이며($P=0.000$) 또한 소득과 이용자의 횃수는 Negative한 상관성을 지녀 소득이 낮을수록 공원을 이용하는 횃수가 많았다. ($C=-0.1035$, $P=0.030$) 이는 소득과 이용횃수와의 Crosstab에서 소득이 낮은 이용자들의 공원이용 불만과 연결된다.

공원의 만족감이 공원의 수 또는 공원의 크기와는 각각 ($C=0.0706$, $P=0.099$ 와 $C=0.0854$, $P=0.060$)으로 큰 상관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공원의 만족이 공원의 위치와 Negative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C=-0.1673$, $P=0.222$)

III. 연구의 결과

- 현재 1994의 도시공원량은 1990년에 비하여 근린공원은 919,543㎡, 어린이공원은 150,687㎡ 증가하였으나 1인당 공원량은 90년에 비하여 0.02㎡ 감소되었다.

- 도시공원의 공급이 <표 9>에서와 같이 밀도 개념이 없이 3%의 공원면적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구획정리 사업에서는 일정한 기준 3% 만족하도록 공급되며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토지개발공사의 경우 공원을이 점점 최근에 도달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개발규모와 공원녹지 면적은 개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원녹지에 용지 면적도 확대되고 있다.

- 공원이용이 최근에 와서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 1인당 면적의 변화에는 뚜렷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공원면적율이 확대되더라도 용적율의 증가에 의한 고밀도로 단지가 증가되어 많은 유입 인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거단지가 가장 가까운 주변에 보다 맑은 녹지공간, 공원을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공원율에 대한 기준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기준, 개발구역면적의 공원을 3%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구역정리법에서와 같이 3㎡이상 또한 구역면적의 3% 공원율을 같이 공급하도록 하여 단지의 밀도개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원들이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시에 공급됨으로 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1차순환 도로내에 산재한 근린 공원은 조성된 2개소 지정된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어린이 공원도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나 학교시설 이전에 따른 실질 공원이용에 있어 이 지역은 공원시설이 공급되어야 할 취약지역이다. (학교시설의 이전은 이 지역이 Apt지역으로 가시화 되어 유입인구 유발과 함께 준 공원의 학교시설 이용이 차단되어 더욱 공원 이용의 감소하여 환경악화를 초래한다⁸⁾)

· 광주시 토개공에 의해서 조성된 지역의 공원면적율은 7.7%로서 78개 전국 토개공지구 김(1994)의 공원 면적율 5.31%보다 높고 1인당 공원면적 3.08㎡/人보다 4.90㎡으로 높은 상태이며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 3.83/人보다 높은 현실이다(서울시 공원 면적율 10.08%) 이는 광주의 첨단단지 개발시 1인당 14.73㎡의 대규모 단지 7,828,476㎡를 개발하면서 대규모의 공원 736,995㎡를 공급하였습에 기인한다.

· 주택공사에 의해 조성된 단지의 공원 면적율은 7%이며 1인당 공원면적은 1.1㎡로서 80년대 토개공의 공원공급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 광주시 도시개발공사의 조성단지의 공원율은 4.3%이며 1인당 공원면적은 0.59㎡로서 토개공 1인당 공원공급 면적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 단지의 공원율보다는 밀도가 1인당 공원면적 결정지표 토개공 첨단과 문흥지구 사례에서 보듯이 공원이 각각 9.4%와 9.9%이지만, 밀도에 있어서 지구

가 고밀도인가 저밀도인가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이 각각 14.73㎡와 2.93㎡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地區의 공원면적율의 현 도시계획법에서의 3% 적용보다는 지구의 밀도는 1인당 공원 면적을 조정하는 중요지표이기 때문에 밀도개념을 도입하여 1인당 기준면적의 적용이 요망된다.

· 이용에 관한 상관성 분석결과 공원의 접근거리와 공원까지 오는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공원이용 횟수가 (0.4984)와 (0.5279)로 상관성이 높았고 주거환경과 공원의 이용횟수는 0.0037로 큰 상관성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공원의 이용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공원의 만족도가 클수록 주거단지 만족도가 0.3273으로 높았다. 또한 조정상태가 좋을수록 관리상태가 0.6226으로 좋았다.

· [공원의 이용이 주거에서 공원의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되고 있다] 귀무가설은 주거에서 공원과 거리와 공원의 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시키고 설문지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는 0.48%로 Reject 되었다. 따라서 공원의 이용은 거리와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공원공급의 도시에 있어서 적정으로 분산화하여야 하며 일정지역의 분산효과가 없는 지역의 취약지역에 대한 市의 공원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도시이전시설(학교, 관공서등)이 발생할 시기에 고려되어야 한다.

VI. 결론

우리나라의 공원배치는 일본이 경험한 단계별 입지본위형(Resource Oriented)라든가 분산계획(Distributed planning)과 구조적 공원 배치계획(Structural park-placement planning)의 시대적 구분이라기 보다는 택지 개발에 따른 택지 개발지구 위주의 공원계획이지 도시전체에 있어서의 공원계획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공원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은 공원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의 계획이 공원기본계획하에서 구조적으로 분산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택지개발시

공원의 공급은 현재 특별하게 규제하는 법이 없이 토지구획정리의 기준이상을 참조로 공원면적을 3%이상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밀도에 대비하기 위하여 1인당 공원면적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공원이용측면에서 접근거리와 공원이용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지구공원의 성격을 띤 근린공원과 입지분위형 근린공원을 제외하고는 근린공원을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로 분산배치함이 효율적이다. (현 광주시 근린공원 평균 62,981㎡, 법규 10,000㎡)

參 考 文 獻

1. 광주직할시 (1993) 「주민등록 인구통계작성보고서」, 광주직할시.
2. 권상준, 심경구, 김유일 (1994) “도시근린공원의 도달거리와 포착력에 관한 계량 모형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22 pp.149~177.
3. 김광수 (1977) 「이용자 실태분석을 통한 도시공원계획 기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귀곤외 2인 (1994)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원녹지계획 지표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 22 pp.179~198.
5. 김동찬 (1986) 「도시공원내 휴식공간의 선호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김성일 (1990) “근린주개념과 도시공원설계”, 「한국조경학회지」, Vol. 18.
7. 박재봉 (1984) 「도시공원 이용자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서주환 (1983) 「근린공원의 입지성에 따른 이용형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안동만의 3인 (1991)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접근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18 pp. 18~28.
10. 이규목 (1978) “서울시 도시공간의 이용형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조경학회지」, No.12:pp.11~23.
11. 장병관 (1985) 「도시소공원의 이용후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최기수의 5인 (1994) “대도시 주민의 실외 여가 활동 선택모형”, 「한국조경학회지」, Vol.21 pp. 131~145.
13. 황기원 (1990) “서울의 공역녹지/미래의 모습”, 「환경과 조경」, 제 40호 p.60.
14. 황기원 (1990) “도시공원녹지계획”, 「조경계획론」, 문운당.
15. 토지개발공사 (1987) 「주택단지개발총람」, 토지개발공사.
16. Lineberry, R. L (1977) *Equality and Urban Policy : The Distribution of Municipal Public Services*, Beverly Hills, CA : Sage.
17. Merget, A. (1976) “Equalizing Municipal Services : Issues for Policy Analysis”, *Policy Studies Journal*, 4 (Spring, 1976) pp.297~306.
18. Miranda, R. A. et I. Tunyavong (1994) “Patterned Inequality? Reexamining the Role of Distributive Politics in Urban Service Delivery”, *Urban Affairs Quarterly* Vol. 29.
19. Oh, B. T. (1986) *The provision of Child Care Facilities in Auburn*, M. T. C. P.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ydney.
20. Rooden F. C. (1983) *Green space in cities*, in city Landscape, Butterworths.
21. Wolman, H. and M. Goldsmith (1990) “Local Autonomy as a Meaningful Analytic concept: comparing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Urban Affairs Quarterly*, Volume 26 September, pp. 3~27
22. 高原榮重 (1986) 「도시의 녹지계획」, 鹿島出版會 p. 51.
23. 東京都 (1990) 「동경도 녹의 배증계획」, 동경도.
24. 衰茂壽太郎 (1988) “일본국에 있어서 공원배치 계획의 변천과 특성”, 「제 23회 일본도시계획학회 학술연구 논문집」, 제 23회 p.205.
25. 河野泰治 (1987) “유아, 아동 공원의 배치계획에 대하여(계획단위와 이용행태 분석에 대해)”, 「제22회 일본도시계획학회 학술연구논문집」, p.265.
26. 丸田頼一 (1981) “도시계획에 있어서 녹지의 조사연구 - 택지개발과 공원녹지등의 관계고찰”, 「제16회 일본도시계획학회 학술연구발표회」, pp.349~354.